

म्रा स्पर्धानः याद्ये निष्यं

보도시점 : 2025. 4. 29.(화) 11:00 이후(4. 30.(수) 조간) / 배포 : 2025. 4. 29.(화)

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, 390건 적발

- "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" 징구를 통해 직계존속 위장전입 등 3배 이상 적발

- 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'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(약 2.6만호)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, 총 390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.
 - 적발된 사례는 **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**을 **중심**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, 청약자격 조작,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,
 -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, **형사처벌**(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)과 함께 **계약취소**(주택환수) 및 **10년간 청약제한**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.
 -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,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"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"*을 징구했으며, 그 결과 부정 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**하였다고 밝혔다.
 - * 이용한 의료시설(병원·약국)의 명칭,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거주지 확인 가능 **[적발건수] ('23년上) 218건 → ('23년下) 154건 → ('24년上) 127건 → ('24년下) 390건
- □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.
 - ① (**직계존속 위장전입**)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**허위로 직계존속*을 전입 신고하여 청약**하는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.
 - *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격 인정
 - ② (청약자 위장전입)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*하여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41건 적발했다.
 - *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, 상가, 공장, 창고,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

- ③ (위장결혼 및 이혼)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, 청약 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 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.
- ④ (위조 및 자격조작)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"혼인관계 증명서"를 위조하거나, 시행사와 공모하여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 청약을 2건 적발했다.
- ⑤ (불법전매)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,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항을 2건 적발했다.
- □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"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「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」 제출을 의무화하여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" 이라고 밝히며,
 - "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"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	책임자	과 장	정수호 (044-201-3337)
		담당자	사무관	엄성열 (044-201-3342)
			주무관	배한근 (044-201-3345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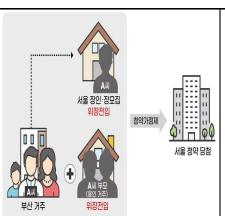




참고

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

청약자 위장전입 직계존속 위장전입 (가점제) 직계존속 위장전입 (노부모특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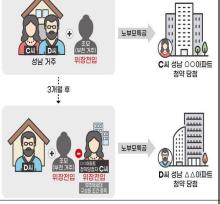
A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**부산에서** 거주하면서, 본인은 서울 장인·장모 **집으로 위장전입**하고, **용인**에서 거주 하는 부모를 부산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,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 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됨

*『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』으로 위장전입 확인



청약가점제 과천 청약 당첨 BM는 남편 및 3자녀와 함께 용인에서 거주하면서. 서울 노원구에서 거주하는 모친과 경기 동두천시에서 거주하는 시모를 본인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. **과천**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**청약가점제**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됨

* B씨집(방4)에서 청약자 부부(방1), 중·고·대학생 3자녀(방3) 외에 모친·시모까지 거주하기는 곤란



CM와 DM(C의文)는 성남에서 거주 하면서, 부천 사위집에서 거주하는 조모를 본인집으로 위장전입시킨 후. 성남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각각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됨

*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먼저 당첨된 C씨를 옆단지로 위장전입시키고. 3개월 후 D씨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

위장결혼



E씨는 F씨와 공모하여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**인천**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 되자 계약 및 혼인신고를 한 후, 법원 소송*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함

* "혼인 무효 확인의 소"(신혼부부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을 뿐, 혼인에 대한 논의나 공동 생활은 없었음)를 제기하여 혼인관계증명서 정정

